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5
----------	------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10. 3. 4 준공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하고,
- 나.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
(안 별표 1)
- 나.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 2, 안 별표 6, 안 별표 8)
- 다. 시립도원수영장 입장료,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함.
(안 별표 3)
-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 나. 타 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9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8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10조제1항 중 “별표2,3,4,5,6,7,8과”를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호·제8조제4호·제13조제4항제2호·제1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축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보조경기장	육상·축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2	시립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3	시립도원체육관		농구·배구·핸드볼 등	인천 중구 도원동 12-155번지 일대
	시립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 중구 도원동 47번지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배구 등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 일대
		보조경기장	농구·배구 등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0번지 일대
6	시립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 서구 가좌동 606-1번지 일대
7	시립옥련사격장		사격	인천 연수구 옥련동 1번지 일대
8	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 계양구 계산동 신11번지 일대
		시립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 남구 송의동 7-171번지 일대
9	시립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 남구 송의동 7-171번지 일대
1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싸이클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 일대
11	시립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 남구 문학동 388번지 일대
1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배드민턴 등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13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배드민턴 등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7번지 2호
14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야구 등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번지 1호

[별표 2]

체 육 시 설 전 용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시립도원수영장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시립도원체육관	주간	60,000	70,000	200,000	28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70,000	100,000	280,000	39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그 밖의 심야 등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피겨스케이팅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주간	20,000 (면당)	25,000 (면당)	35,000 (면당)	45,000 (면당)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40,000	60,000	110,000	170,000	* 축구,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축구장	70,000	100,000	170,000	210,000				
	보조경기장(주간)	40,000	60,000	110,000	170,000				
시립문학야구장	주간	40,000	70,000	110,000	14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야간	60,000	80,000	130,000	170,000				
인천삼신월드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경기장	30,000	50,000	100,000	15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I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사이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면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1인당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월회원	월강습	
시립도원수영장	1회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노인· 어린이 1,300	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300 노인· 어린이 1,000	일반 38,000 군인· 청소년 32,000 노인·어 린이 19,000	일반 48,000 군인· 청소년 39,000 노인·어 린이 24,0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대여료는1,000원(동일 일기준)
시립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1,000	3,000 (면당)	30,000	60,000	
시립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일반 30,000 군인· 청소년 20,000 어린이 12,0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40,000 군인·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시립옥련 사격장	실 내	1회2시간	700	400			
시립수봉양궁장	1회2시간		2,100	1,400	20,000		
시립수봉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1회2시간		1,400	1,000	14,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1회 1일		학생 5,000		경륜선수 300,000		
			일반 7,000		일반선수 100,000		
시립다목적 운동장	장구코트	1 회	주간 1,000 야간 1,500	3,000 4,500	30,000 45,000	60,000 90,000	
		1시간					

[별표 6]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 계 방 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 육 외 행 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 화 촬 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방송과 동일				
전 기 료		기본사용료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시립도원체육관		40,000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시립도원수영장		50,000				
시립가좌테니스장		7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70,000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시립문학야구장		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8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7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7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70,000				

[별표 8]

부속시설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광판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일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경기 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 동시 사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용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전기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냉난방	LNG		연료비 (시간당 60,000)
	천정조명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 사용전기관허요금
조명탑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 인터넷, 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u>기타</u> 행위를 말한다.</p> <p>3.~8. (생략)</p> <p>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u>기타</u>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p> <p>10.~17. (생략)</p> <p>18. “일반행사”라 함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u>시장</u>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그 밖의</u> ----- -----</p> <p>3.~8. (현행과 같음)</p> <p>9. ----- --- <u>그 밖의</u> ----- -----</p> <p>10.~17. (현행과 같음)</p> <p>18. ----- ----- ----- --<u>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 -----<u>시장</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p> <p>1.~6. (생략)</p> <p>7. <u>기타</u></p> <p>② (생략)</p>	<p>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p> <p>1.~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3. (생략)</p> <p>4.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7조 (사용 제한)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u>기타</u>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p>	<p>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 -----</p>
<p>제10조 (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u>별표2, 3, 4, 5, 6, 7, 8</u>과 같이 하며, 관람입장료는 <u>별표9</u>와 같이 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10조 (사용료) ① ----- ----- <u>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u>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u>기타</u>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는 시설 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⑤ ----- ----- <u>그 밖의</u> ----- ----- -----</p>
<p>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② (생략) ③ 제2항 <u>각호</u>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u>----- ----- ----- ----- ----- ----- ----- ----- -----</p>
<p>제12조 (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u>당해</u>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u>당해</u>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생략) ② (생략)</p>	<p>제12조 (초과 사용료) ① ----- ----- ----- ----- ----- 1. ----- : ----- <u>해당</u> ----- 2. ----- : ----- <u>해당</u>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③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④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기타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호-----</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③---각 호-----</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④---각 호-----</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의 -----</p> <p>-----</p>
<p>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등급1급내지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p> <p>2.·3. (생략)</p>	<p>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p> <p>-----</p> <p>-----</p> <p>-----</p> <p>-----</p> <p>1. -----</p> <p>---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p> <p>-----</p> <p>2.·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 (입장권) ①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에 1</u>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 (입장권)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② (생략)</p>	<p>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u>당해</u>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 -----<u>해당</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전문체육시설) ○ 제6조(생활체육시설) ○ 제7조(직장체육시설)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p><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p><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p style="text-align: center;">“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②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든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타시·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교

인조잔디 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시도명	시설명	잔디종류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시	삼산월드체육관	인조잔디	50,000(주) (75,000)(야)	100,000(주) (150,000)(야)	100,000(주) (150,000)(야)	140,000(주) (210,000)(야)	1일 2시간
서울시	창동운동장	인조잔디	120,000(주) 156,000(야)	156,000(주) 202,800(야)	288,000(주) 374,400(야)	374,400(주) 486,720(야)	야간 : 주간 30%가산 1회
부산시	강서체육공원	인조잔디	100,000(주) 150,000(야)	150,000(주) 225,000(야)	200,000(주) 300,000(야)	300,000(주) 450,000(야)	그 밖의 행사 400,000 1회
대구시	강변축구장	인조잔디	70,000(주) 105,000(야)	100,000(주) 150,000(야)	200,000(주) 300,000(야)	300,000(주) 450,000(야)	야간 : 주간 50%가산
광주시	무등경기장	인조잔디	70,000(주) 105,000(야)	105,000(주) 157,500(야)	120,000(주) 180,000(야)	180,000(주) 270,000(야)	영리행사 240,000 야간 : 주간 50%가산
울산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55,000(주) 82,500(야)	82,500(주) 123,750(야)	120,000(주) 180,000(야)	180,000(주) 270,000(야)	1일 4시간
부천시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오정대공원	정규경기장	60,000	80,000	150,000	200,000	2시간기준
		중경기장	40,000	60,000	120,000	170,000	
		소경기장	30,000	40,000	100,000	150,000	
수원시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	30,000 40,000	40,000 50,000	200,000(주) 400,000(야)	300,000(주) 500,000(야)	체육경기는 1시간 기준
안양시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	40,000	40,000	100,000(주) 150,000(야)	150,000(주) 200,000(야)	2시간기준 시간당 (85,000)

- ※ 조기(오전 8시까지) : 대전(주간사용료의 30% 감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주간사용료의 50% 감면)
-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산정

□ 야구장

(단위 : 원)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	시립문학야구장	야구장	40,000	70,000	110,000	140,000	1일 3시간
서울	잠실종합경기장	야구장	210,000	273,000	504,000	655,200	야간 : 주간 30%가산
	목동운동장	야구장	100,000	130,000	418,000	543,400	
	구의야구공원	야구장	70,000	91,000	200,000	260,000	
	신월야구공원	야구장	70,000	91,000	200,000	260,000	
부산	종합운동장	야구장	200,000	300,000	400,000	600,000	그 외 행사 800,000 휴일50% 가산적용
	구덕운동장	야구장	40,000	60,000	100,000	150,000	그 외 행사 300,000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주간 50%가산
	두류운동장	야구장	50,000	70,000	100,000	150,000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30,000	45,000	80,000	120,000	영리행사 160,000
대전	한밭야구장	야구장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 주간 50%가산
울산	문수간이야구장	야구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 : 주간 50%가산 1일 5시간
부천	종합운동장	야구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 없음
수원	종합운동장야구장	야구장	90,000 (100,000)	100,000 (15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안양	야구장	야구장	40,000 (60,000)	60,000 (80,000)			1회 2시간
전남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	120,000 (130,000)	150,000 (160,000)			1회 3시간

□ 실내야구연습장

(단위 : 원)

시도명	시 설 명	규모(m ²)	시설이용	비 고
인천시	SK실내야구장	30		SK선수 전용
서울	야구야구실내연습장(포이동)	30	100,000원	2시간20분 (개인시설)
	현천동실내야구연습장	36	주간 30,000원, 주말 100,000원	1시간 (개인시설)
경기도	파주화인 야구연습장	30	100,000원	2시간30분 (개인시설)
전라남도	진남실내야구연습장	921	평일 40,000원, 주말 60,000	1시간 (공공시설)

□ 풋살구장

(단위 : 원)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시도명	시 설 명	범 위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간	30,000 ~ 40,000				1시간
		야간	40,000 ~ 50,000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주간	30,000 ~ 39,000				2시간
		야간	39,000 ~ 50,70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간	30,000	39,000	60,000	78,000	1면 2시간
		야간	39,000	50,700	78,000	101,400	
전라남도	남해스포츠파크		20,000 ~ 30,000				3시간

타 시 · 도 부속시설사용료 비교

□ 중계방송사용료

구 분		TV		라디오		ARS		비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인천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체육경기외	70,000	60,000	30,000	21,000			
서울	체육경기	192,000	96,000	96,000	48,000			
	체육경기외	288,000	144,000	144,000	72,000			
부산	체육경기	160,000	80,000	80,000	40,000	10,000	10,000	
	체육경기외	240,000	120,000	120,000	60,000	20,000	20,000	
울산	체육경기	160,000	86,000	80,000	43,000			
	체육경기외	260,000	143,000	130,000	73,000			
대구	체육경기	160,000	80,000	80,000	40,000			
	체육경기외	240,000	120,000	120,000	30,000			

- *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기본방송 사용료의 2배를 징수(ARS제외)한다(서울,부산)
-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대구)
- *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부산)
- *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에 TV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전기료 기본료

구 분		전기 기본료	비고
인천	시립도원체육관	40,000	
	시립도원수영장	50,000	
	시립가좌테니스장	7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70,000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 80,000 보조경기장 : 60,000	
	시립문학야구장	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8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7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7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70,000	
서울	모든 시설	월기본료 × 1/30 ※ 월기본료 : 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 × kw당 한전기준 단가	
부산	종합주경기장	80,000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 구덕야구장	40,000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실내체육관	30,000	
울산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100,000	
	기타 체육시설	50,000	
대구	축구,야구장	50,000	
	기타 경기장	30,000	
* 기본사용료 + 실제 사용료 추가 징수			

□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인	천	영화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40,000	* 전시 및 관람을 위한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1일기준)	
		야간		70,000			
	에드버튼 또는 유사물의 게양	1일 1개		7,000			
	기타게시등의 부착물 광고물	1.2mm × 8m이내		1년간 - 공개경쟁입찰, 5일이내 - 70,000원, 1일초과 - 7,000원			
대	구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인 터뷰 제외)	1회 4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75,000		
	에드버튼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30,000			
	프로그램 등의 선전 책자 판매행위			판매총액의 20%			
	시설물에 부착·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1.2m×10m이내		1년이상 공개경쟁입찰,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	현수막은 m ² 당 1,000원(1일기준)		
	전광판 광고물	5.5m×4.0m이내 개당/1일		50,000	내용중 공익광고를 50%이상 편성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			(매출액-원가)×판매 (대여)수량×20/100	판매이익의 20%		
	무인비행선	1일 1대당		100,000			
울	산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게시면적 (10m ² /일)		43,000원		
		경기장내 A보드 광고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부 양 광 고 물	1일 1개		16,000원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등의 판매행위			판매부수×단가×20%		
		영 화 촬 영	1회 4시간		300,000원 (1시간 초과 75,000원)		

구	분	금	액
서울	애드벌룬(1일 1개당)	가. 국내아마추어경기 : 15,000~22,5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40,000~60,000	
	무인비행선(1일 1대당)	100,000~150,000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이내, 진열·전탑 1m²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1일 5m² 1점 기준)	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1일당) : 30,000~45,000 나. 기타 국내경기(1일당) : 40,000~6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1일당) : 60,000~90,000	
	차량전광판 광고(1일 1대당)	가. 상업광고 : 250,000~325,000 나. 행사고지 : 100,000~15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	가. 기본사용료(4시간) : 360,000~468,000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에는 1시간당 550,000~715,000으로 한다.	
		나. 초과사용료(시간당) : 90,000~135,000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에는 10분당 91,000~110,000으로 한다.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스 1개당 50,000~75,000	
* 광고용보드(A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산	영화·CF·드라마 촬영	300,000원	
	선전물(부착광고물 길이 10m×폭 1m 기준)	· 1일 1개 기준 : 30,000(1일초과 5,000원) ·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 한다.	
	부양광고물(애드벌룬) 1일(주간)→1개기준	· 국내 아마추어경기 : 10,000원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 20,000원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판매부수×단가×20/100	
	행사관련 기타물품 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20/100	
	전광판 영상광고	· 광고사용료는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 후 별도 결정	
	*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1회 15초 이내로 한다.		

□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		요 금		
인 천	전광판		1일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냉 난 방	전기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LNG	연 료 비 (시간당 60,000)	
	천 정 조 명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조명탑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경기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 야구장 전광판 및 타워 동시 사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용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 기본료 1개만 적용 				
서 울	전기조명		월기본료×1/30 ※ 월기본료: 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단가	
	냉·난방 및 기계설비		가. 기계사용료: 30,000~45,000 나. 전기사용료: 월기본료×1/30	
	음성정보 중계료		1일 1회선: 20,000~30,000	
	음향시설		60,000~90,000	
	잔디 관수료		30,000~45,000	
	전 광 판 (1일)	컬러전광판(대형)		가. 문화예술행사: 2,000,000~2,600,000 나. 체육경기·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 500,000~650,000(다만, 체육경기에 한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30분 기준) (1) 평일: 200,000~260,000 (2) 토요일·공휴일: 400,000~520,000 (3)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흑백전광판(스코아보드를 포함한다)		100,000~150,000
		스코아보드		가. 흑 백: 30,000~45,000 나. 3색 컬러: 50,000~75,000
	부속시설사용료는 위 표의 기본료에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가스 또는 급수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 산	전 기	라이트	기본요금 : {(기본료×사용일수)+(변압기 용량×기본요금단가×사용일수/30)}+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요금단가}
일반전기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사용시간×기본요금 단가×사용일수/30} + 사용량 요금 : {전기사용량×요금단가}	
냉 난 방 료		냉방	일기본료(30,000원)+전기기본요금+사용량요금+연료비	
		난방및가온	일기본료(30,000원)+전기기본요금+사용량요금+연료비+실사용 상하수도료(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주경기장 : 80,000원 ·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 종합야구장·구덕야구장 : 4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기장실,구덕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부산실내빙상장 : 20,000원 				

구		분		요 금(비교)
부산	전광판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 종합주경기장 : 300,000원 · 종합야구장 : 150,000원 · 구덕주경기장,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50,000원 - 3컬러(3 color) 전광판(1일) ·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원 · 구덕야구장 : 50,000원 · 부산실내빙상장 : 30,000원 - 스코어보드(1일) : 20,000원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 구덕실내체육관,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사용을 1일로 본다. -전광판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광판 사용에 소요된 전기를 부과한다.
	음향설비	- 종합경기장 일 기본료(100,000원)+(마이크대수×5,000원) - 기타 경기장 일 기본료(50,000원)+(마이크대수×5,000원) (단, 음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시설은 일 기본료 50%를 감액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 사용을 1일로 본다.
	인조잔디관료	일기본료(20,000원)+실사용 상하수도료		
울산	전기	나 이 터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종합운동장·문수축구경기장 100,000원, 기타 체육시설 50,000원)	
		일 반	기본료+실사용료	
	전광판	종합운동장,문수축구경기장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150,000원)	
		기타 체육시설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150,000원)	
	냉난방	냉 방	기본시설사용료(36,000원), 유류대 별도	
		난 방	"	
	음향	음향설비	기본시설사용료(30,000원)+마이크수×5,000원	
집기	집기사용료	· 탁자 : 3,000원, · 의자 : 500원 · 복싱링 : 25,000원, 그 외 경기용 비품 20,000원 · 그 외 일반 비품 개당 500원 ※ 일반체육경기시는 면제		
수도료	실사용료			
대구	조명시설	수용요금×일수/30+사용전기요금+기본사용료		· (수용요금×일수/30) : 선납 - 축구·야구장 : 50,000 - 기타경기장 : 30,000
	방송시설	앰 프50,000		
		확성기(1조)1일5,000		
		이동식앰프20,000		
	전기	수용요금×일수/30+사용전기요금		
	식당·디카점·매점·점포·사무실·도장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광판	1일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 칼라 : 100,000 - 흑백 : 30,000 - 스코어보드 : 20,000
	인조잔디관수료	1회(2시간)27,000		
	롤러스케이이트대여료	1회2,000		
	후로아카바	1회100,000		
냉·난방	1회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용		기본사용료 : 30,000	
기타시설물	시장이 따로 정함			